

발간등록번호

여성인권-단행본-2024-032



인신 매매 방지법

인신매매방지법 가이드북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 방지법 가이드북

CONTENTS



01 GUIDE

인신매매 이해

- 03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 04 인신매매등이란?
- 05 인신매매 VS 인신매매등

02 GUIDE

인신매매등 피해자

- 06 피해자 정의
- 07 보호 및 지원 대상

03 GUIDE

신고 의무자

- 08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 09 피해자 대응 방법

04 GUIDE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 10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란
- 10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05 GUIDE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및 보호·지원

- 13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 13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

06 GUIDE

피해자 지원 정보

- 14 피해자 지원 정보

등록번호 여성인권-단행본-2024-032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획,구성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_ TEL 02-735-1050 주소 [04505]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_ TEL 1600-8248(상담전화) FAX 02-6363-8493

디자인 도노디자인 02 2272 5009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인신매매 이해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로 인식

우리사회의 인식

인신
매매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

국제사회의 인식

국제사회는

성매매, 성착취, 노동착취, 언어·신체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지속적 발생에 우려를 표하며, 각국에 적절한 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

우리나라는

- '13년 형법을 일부 개정해 인신매매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국제사회가 정한 인신매매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지 못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에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산재해 피해자 조기 발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인신매매 방지법 법률 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정의규정을 반영하고 인신매매 등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21년 4월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

인신매매등이란?

(법 제2조)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실제 착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사전에 알고 동의하였다도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모집·운송·은닉 등의 인신매매 행위를 한 경우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인신매매등 VS 인신매매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의정서 제3조)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처지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보상이나 혜택을 주거나 받는 것

형법

-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 국한한 '인신매매'로 협소하게 적용

☞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인신매매 방지법

- 사람 매매에 한정하여 적용해 온 '인신매매'의 개념을 확장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포괄적 의미를 담고자, '인신매매등'을 사용

☞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1항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인신매매등 피해자



피해자 정의

인신매매등 피해자 제3조

-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제2조 제1호

- 폭행이나 협박, 강요와 같은 일정한 수단이 없더라도 모집·인계·은닉 행위 등 착취 목적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인신매매등 범죄 제2조 제2호



- 인신매매등으로서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 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판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상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적자

한국 국적의 여성이 해외 체류 중 납치되어 감금된 상태로 끌려가 다른 국가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인신매매방지법에 의한 피해 지원 가능

신고 의무자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신고할 수 있는 자

- 인신매매등 피해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 수사기관(112) 혹은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권익보호기관)에 신고 가능

신고 의무자 (제21조제2항)

- 다음 시설의 장 혹은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부과

관련법

관련 시설

① 인신매매방지법(제33조)	인신매매등 피해자지원시설
② 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6, 제5조, 제7조)	긴급전화센터(여성긴급전화1366) / 상담소 / 보호시설
③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제9조, 제17조)	상담소 / 지원시설
④ 성폭력방지법(제10조, 제12조, 제18조)	상담소 /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⑤ 아동복지법(제50조, 제45조)	아동복지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⑥ 인신보호법(제2조)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
⑦ 청소년보호법(제35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⑧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청소년성보호법(제47조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⑩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59조11)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지역)
⑪ 노숙인복지법	노숙인 시설(복지시설, 종합지원센터)
⑫ 선원법(제142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⑬ 외국인고용법 (제21조, 시행령 제31조 제2~3항)	해당 조항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 법인·단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제21조 제3항, 제48조)

- 인신매매등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조치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
-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대응 방법

의사소통 가능 여부 확인

- 외국인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역 가능 기관 사전 확인

긴급성 여부 확인

- 긴급하게 즉시 개입하여야 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고지 후 경찰 신고 및 현장 출동 요청, 상담자는 경찰에 조치 결과 확인



- 긴급성 판단 여부를 위한 참고 기준

인신매매등 피해의 긴급성 판단

- | | |
|---|---|
| ① | 현재 인신매매등 행위 및 폭력 등이 진행 중인가? |
| ② | 즉각적인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가? |
| ③ | 즉각적인 신변보호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가? |
| ④ | 당장 증거 수집을 하지 않으면 상처나 혈흔 등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은가? |
| ⑤ |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는가? |

※ 위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접수한 상담원의 판단이 중요함.

피해 상담 시 고려 사항

- 내담자(피해자 혹은 신고의무자 등)와 대화 시에는 상담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격려하고, 해당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전화 상담 시, 필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필수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현재 거주지(장소), 피해상황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피해자 식별지표란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신속·정확한 발견과 조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일반화된 지표

피해자 식별지표의 세부 점검항목

행위

식별 항목	요소
①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해,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	모집
②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하였다.	운송
③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은닉
④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인계, 인수

수단

식별 항목

요소

- ①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 ②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위계
(사기·기만 등 유인포함)

- ③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목적

식별 항목

요소

- ①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공통

- ②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 받았다.

- ③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 착취를 당했다.

성매매와
성적착취

- ④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숙식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력
착취

- ⑤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 폭력을 당했다.

- ⑥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의 흔적이나 상처로 인해 불법 장기이식이 의심된다.

장기적출 등
착취

피해자 식별지표

수단 요소 중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경제적 통제수단

- 사업장에서 부당한 규칙을 이용하여 급여·퇴직급여를 자신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 또는 이탈보증금에 의한 속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겪었다.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 채무 변제를 이유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 채무의 예시: 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사업장 내 벌금, 생활비 명목 선급금 등
- 노동의 대가로 급여·퇴직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물리적 통제수단

- 고용주, 기획사관계인, 중개인, 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하였거나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일했다.
- 숙소에서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감시를 당했다.
-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된 상태로 감금당했다.
-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 못하거나 신분증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서적 통제수단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국내에서 내쫓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
-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용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및 보호·지원



피해자 확인서 발급

법 제14조

- 인신매매등의 피해자·신고의무자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피해자 지원

구분	내 용
상담 지원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취학 지원	피해자등이 미성년인 경우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포함) 지원
취업 지원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 지원
법률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 지원
생계 지원	피해자등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지원
귀국 지원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기타 지원	이동 지원, 사법 지원이 아닌 행정처분 요구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

※ 법 제32조에 따라 중복지원은 제한

피해자 지원 정보



구분	지원기관		지원내용	운영시간
대표 기관	중앙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600-8248		- 인신매매등 상담 ※ 현재 지역권익보호기관 미설치로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한시적 피해자 지원(사례판정위원회, 지원시설 연계 등) 역할 수행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긴급 대응	112		인신매매등 긴급 범죄신고, 출동요청 등	365일 24시간
	119		신체상해 등으로 긴급하게 구조·이송이 필요한 경우	
성 착취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리)신고접수, 긴급상담, 관련 기관 연계, 긴급구조 등	365일 24시간
노동 착취	일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 고용상담, 노동상담, 외국어상담(영어, 중국어) 등 (지원언어) 3개 국가(한국, 영어, 중국)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선원	한국 선원 복지고용센터 1566-3151	- 외국인 선원 임금 체불 및 급여, 재해보상 및 퇴직, 기타 고충 상담 및 통역 (지원언어)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정신 건강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구분	지원기관	지원내용	운영시간
외국인	다누리콜 1577-1366	•전문 법률자문, 3자 통화 통역 및 번역서비스 등 •지원언어 13개 한국, 네팔, 라오스, 러시아, 몽골, 베트남, 영어,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타갈로그)	365일 24시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 기관 등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통역 서비스 제공 등 •지원언어 20개 한국, 네팔, 독일,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스페인, 아랍, 영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	평일 09:00~22:00 (18:00 이후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외국인력 상담센터 1577-0071	•고용 · 체류 지원 업무 상담 등 •지원언어 18개 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영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평일 09:00~18:00 (연중무휴)
그 외	장애인 학대 피해 1644-8295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등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노인 학대 피해 1577-1389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학대 피해 노인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피해자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등	365일 24시간

인신 매매 방지법

인신매매방지법 가이드북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04505)

Tel. 02-735-1050 Fax. 02-6363-8493 상담전화 1600-8248